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2
------	-----

제출년월일 : 2005.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분야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조정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2004.12.18)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543명에서 32명이 증원된 575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64명(증 32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11명

※증원사유

가. 부서신설에 따른 정원 책정(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 재난안전관리과 : 5명 증

- 스포츠사업단 : 5명 증

나. 지방행정 기능보강 : 총 22명

- 새주소사업 +1명

- 혁신분권 +1명

- 백두대간보호 +2명

- 사회복지 +4명

- 산업경제활성화 +6명

- 주택가격평가(과표) 전담 +2명

- 책임배상보장법에 따른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전담 +1명

- 경관관리 및 T/F팀 운영 +5명

-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안 제3조)

-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불 임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라. 입 법 예 고 : 평창군공고2005-45호(2005.1.29)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 바. 기 타 : 비용소요 추계서 불임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을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중 “543명”을 “57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32명”을 “564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직급별 정원)”으로 하고, 동조 “규칙으로 정한다”를 “ [별표 1] 과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렬별 정원의 규정)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관	계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6급	7급	8급	9급	소계	9급	10급
본 청	22	20	8	7	3	2	2	1	1

②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만료 시 종전의 정원으로 환원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u>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43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32명</u></p> <p>2. (생략)</p>	<p>제3조(실·과장의 직급) ----- ----- ----- <u>575명</u> -----, -----.</p> <p>1. ----- : <u>564명</u></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u>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직급별 정원) ----- ----- ----- <u>[별표1]</u> ----- <u>과 같다.</u></p>
<p><u><신 설></u></p>	<p>제4조(직렬별 정원의 규정) <u>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p>

[별표 1]

평창군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직종 · 직급별		합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과
총 계		575	564	11
정무직	소계	1	1	
	군수	1	1	
일반직	소계	442	436	6
	4급	4	4	
	5급	23	21	2
	6급	119	118	1
	7급	135	133	2
	8급	106	105	1
	9급	55	55	
연구직	소계	1	1	
	연구관			
	연구사	1	1	
지도직	소계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별정직	소계	17	17	
	6급상당	16	16	
	7급상당	1	1	
기능직	소계	90	85	5
	기능6급	3	3	
	기능7급	8	7	1
	기능8급	14	13	1
	기능9급	29	28	1
	기능10급	36	34	2

(※ 한시정원 포함)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12명 증원
지방행정 기능보강을 위한 일반직 23명 증원하고, 기능직 3명을 감원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1,703,957	
○인건비(100)	1,255,274	
- 기본급	798,063	○ 본봉 5급 2,172,800원×1명×12월=26,073,600원 6급 1,882,600원×13명×12월=284,325,600원 7급 1,472,800원×5명×12월=88,368,000원 8급 1,061,000원×6명×12월=76,392,000원 9급 951,500원×10명×12월=114,180,000원 ○ 정근수당 589,339,200원×2/12=98,223,200원 ○ 기말수당 589,339,200원×2/12=98,223,200원 ○ 봉급조정수당 589,339,200원1/12×25%=12,277,900원
- 수 당	121,485	○ 초과근무수당 6,475원×35명×30시간×12월=81,585,000원 ○ 정액수당 · 가족수당 - 30,000원×35명×1.50×12월=18,900,000원 · 정근수당 - 5년이상 50,000원×35명×12월=21,000,000원
- 정액급식비	49,920	130,000원×32명×12월=49,920,000원
- 교통보조비	48,272	125,710원×32명×12월=48,272,640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 명절휴가비	73,667	$589,339,2000\text{원} \times 1/12 \times 150\% = 73,667,400\text{원}$
- 가계지원비	122,779	$589,339,200\text{원} \times 1/12 \times 250\% = 122,779,000\text{원}$
- 연가보상비	41,088	$589,339,000\text{원} \times 1/12 \times 24/1 \times 20\text{일} = 41,088,730\text{원}$
○물건비(200)	61,28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0	$300,000\text{원} \times 2\text{개과} \times 12\text{월} = 7,200,000\text{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20	$60,000\text{원} \times 32\text{명} = 1,920,000\text{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	$100,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월} = 1,200,000\text{원}$
- 직급보조비	50,960	$132,710\text{원} \times 32\text{명} \times 12\text{월} = 50,960,640\text{원}$
○이전경비(300)	387,408	
- 성과상여금	39,105	$1,185,000\text{원} \times 33\text{명} = 39,105,000\text{원}$
- 연금부담금	141,212	○연금부담금 $1,254,329,000\text{원} \times 11.076\% = 138,929,480\text{원}$ ○재해보상부담금 $1,254,329,000\text{원} \times 0.182\% = 2,282,870\text{원}$
- 국민건강보험금	30,793	$1,254,329,000\text{원} \times 2.455\% = 30,793,780\text{원}$
- 연금지급금	176,293	$1,254,329,000\text{원} \times 14.0548\% = 176,293,430\text{원}$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